

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7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8. 31 황대열의원 외 3인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8. 31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9. 9. 8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정취지

-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중증장애인목욕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설치된 고성군 중증장애인목욕탕으로 규정함.(안 제3조)
나. 중증장애인목욕탕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, 난방연료비,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다.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반환규정을 정함(안 제5조)
라. 중증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, 구성,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~제8조)
마. 군수는 중증장애인목욕탕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근거
- 장애인복지법 제6조, 제35조

5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38의 359번지에 건립된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총 건립비 1,370백만원(도비 : 400백만원, 군비 : 794백만원, 기타 : 176백만원)으로 2009년 4월 28일 준공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위 목욕탕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중증장애인 목욕탕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목욕탕이 2009. 4. 28일 준공이 된 것으로 의원입법에 앞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해야 하지 않나.
- 답 : 지난번 현장의정 활동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거론이 있어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음.
- 문 :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면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겠는지?
- 답 : 중증장애인목욕탕과 관련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.
- 문 : 조례가 없어도 예산이 지원되어 왔다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?
- 답 : 포괄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원해오던 것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기 위함.
- 문 : 의원발의 조례이지만 운영은 결국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상 국·도비 확보가 되어야만 군비부담이 적게 소요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- 답 : 국·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9. 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